

#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2,537,885	14,476,137
일반회계	443,982,827	13,319,485
특별회계	38,555,058	1,156,652
공기업특별회계	35,743,704	1,072,31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373,771	641,21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369,933	431,098
기타특별회계	2,811,354	84,341
지하수특별회계	258,955	7,769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2,579	77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1,181,354	35,441
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	1,077,428	32,323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	291,038	8,73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8,18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